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이대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8
----------	------

발의연월일 : 2019. 9. 6.

발의의원 : 이대곤 의원, 김은영 의원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 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평가대상·시기·실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라.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며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4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

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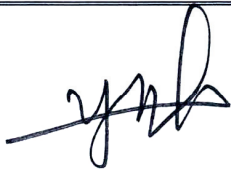
제8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 의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이 대 곤	이 대곤	
김 은 영	김 은영	